

# 『三國遺事』에 나타난 儀禮의 研究

－ 冠·婚·喪·祭禮를 中心으로 －

宋 宰 鏞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I. 序 言
- II. 冠·婚·喪·祭禮 考察
  - 1. 冠禮 - 일정하지 않았던 관례 연령
  - 2. 婚禮 - 왕실 혼례 절차와 혼인 형태
  - 3. 喪禮 - 다양한 상례 방식과 절차
  - 4. 祭禮 - 국가 제의 방식과 시기, 그리고 불교식 제사
- III. 結 語

## &lt;논문 요약&gt;

『三國遺事』는 古代의 儀禮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민속학적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기에 주목하고, 『삼국유사』에 나타난 儀禮, 특히 冠·婚·喪·祭禮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관례는 왕이나 귀족계층들의 자제들이 행했으며, 그 연령도 13세, 15세, 18세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 않다. 고대에는 우리나라대로의 관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혼례, 그 중에서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 절차에 대한 기록은 고려 이전의 왕실의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왕실 혼례 절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유희와 해모수의 사통 내용을 통해 당시의 혼인이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려 초에 근친혼을 했다는 기록은 자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상례 가운데 혁거세왕의 상례에 대한 기록은 최초의 상례(특히 왕실 상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로왕의 장례 내용을 통해 제후에 준하는 봉분을 사용했다는 점과, 탈해왕의 장사 기록을 통해 세골장 풍속과 소상을 만들었다는 것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대의 상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바, 자료적 가치가 높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제례, 특히 수로왕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예컨대 제사방식과 절차, 祭田, 祭需, 祠堂, 眞影 등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고대의 국가 제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삼국유사』는 신화, 설화적인 요소와 후대의 문식이 가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대의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민속학적으로나 예학사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주제어: 삼국유사, 의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민속학

## I. 序言

『三國遺事』는 古代의 역사·사회·문화·종교·사상·언어·문학·민속 등과 같은 다기 다양한 事象들이 기록되어 있는바, 그 자료적 가치가 높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제반 학문분야에서 자료집으로 활용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삼국유사』는 一然이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그리고 자신의 사상에 의한 문화의 재구성이라는 방법론에 의해 고대사회의 생활양식을 체계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민족지나 민속지 내지는 민속사로 볼 수 있다.<sup>1)</sup>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는 대부분 민속지, 민속사, 민속사상 등에 초점을 맞춘 논의였다.<sup>2)</sup> 이러한 연구 성과는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에 대한 연구는 자료소개나 간단한 언급에 그쳤을 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이 너무 짧막하고 소략하여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그 내용이 비록 간단하게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대의 의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기에 주목하였다.

그런바 본고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儀禮, 특히 冠·婚·喪·祭禮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 고대의 관·혼·상·제례를 파악하는데 일

- 
- 1) 박진태, 「민속지로 본 삼국유사」, 『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2000, p. 260. ; 김택규, 「삼국유사의 사회·민족지적 가치」, 『삼국유사연구론선집(1)』, 백산자료원, 1986, p. 539.
  - 2) 조선총독부, 『高麗以前の風俗關係資料撮要』, 1941. ; 김열규, 「민속자료서의 가치 ‘삼국유사」, 『다리』 제 4·5호, 1973. ; 김택규, 「삼국유사의 민속체계」,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박진태,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3.

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민속학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II. 冠·婚·喪·祭禮 考察

### 1. 冠禮 - 일정하지 않았던 관례 연령

관례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식으로 오늘날의 성년식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관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례를 행했던 것으로 짐작은 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관례를 행했던 것으로 짐작 또는 추정되는 유사한 기록들을 통해 그 일단을 추찰해 볼 수밖에 없다. 이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두 성인의 나이 열세 살이 되자, 오봉(五鳳) 원년 갑자년(BC 57)에 남자는 왕이 되고, 그 여자로 왕후를 삼았다.<sup>3)</sup> (필자 밑줄)

유신공은 …… 나이 18세 되던 임신년에 검술을 닦아 국선(國仙, 화랑)이 되었다.<sup>4)</sup> (필자 밑줄)

왕(경문대왕)의 이름은 응림(膺廉)이며, 나이 18세에 국선(國仙)이 되었다.<sup>5)</sup> (필자 밑줄)

관례가 언제부터 행해져 왔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朱子家禮』

3)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이후 권수와 제목만 표시함.) “二聖年至十三歲 以五鳳元年甲子 男立爲王 仍以女爲后”

4)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金庾信>. “庾信公 …… 年至十八壬申 修劍得術 爲國仙”

5)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四十八 景文大王>. “王諱膺廉 年十八爲國仙”

에 관례 부분이 명시된 점으로 보아 朱子 훨씬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례의 의식 자체는 중국의 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관례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6)</sup>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성년식(initiation)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지는 신라의 화랑 제도가 그것이다. 『예기』에 보면, 선비는 스무 살에 관을 썼다. 여기서 관은 晚과 弁을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얹는 모자를 의미한다. 이 관은 태고시대에는 베 관, 고대엔 검은 관, 고구려와 신라는 烏羽冠, 백제는 烏羅冠을 썼다.<sup>7)</sup> 그리고 단군시대의 國子郎(一名 天指花郎)<sup>8)</sup>이나 신라 화랑도의 源花나 화랑도 모두 관을 썼다는 데<sup>9)</sup>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이 “나이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여 복종하였으며, 그들을 龍華香徒라고 불렀다.”<sup>10)</sup>는 기록이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제시한 인용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인용문은 혁거세와 알영이 13세가 되자, 혁거세는 왕이 되고, 알영을 왕후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天子와 제후는 대개 12살 때 관을 썼다. 그것은 歲星이 한 번 마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sup>11)</sup> 13세에 왕이 되고 혼인을 했다는 사실은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도 천자, 제후의 예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대에는 관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sup>12)</sup> 즉위식과 함께 관례와 혼례를 한꺼번에

6) cf. 줄저, 『한국 의례의 연구』, 제이앤씨, 2007, p. 17.

7)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三, <色服>. (김종권 역, 선진문화사, 1969, pp. 515~521.) ; 박경섭, 『한국의 예속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3, pp. 29~31.

8) 『桓檀古記』, <檀君世紀>. (임승국 역, 정신세계사, 1986, p. 89.)

9) 박경섭, *op.cit.*, p. 31.

10) 『三國史記』, 卷 第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

11) 『靑莊館全書』, 第 八卷, 「冠義」.

12) 『眉巖日記』를 보면, 유교를 국시로 하고 『주자가례』를 수용 시행했던 조선시대도 1500년대 후반까지 관례를 잘 행하지 않았다. (줄고, 「미암일기에 나타난 민속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 1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p. 362.)

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혁거세왕이 13세에 왕후 알영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조선시대 평민들이 혼례를 함으로써 성인이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례를 한 것으로 인식한 것과 같은 차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이나 왕후는 즉위식이나 혼인식 때 일반적으로 관을 쓰는데, 혁거세나 알영의 경우 이때 썼던 것으로 짐작되는 관은 관례 시 쓰는 관의 의미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김유신, 세 번째 인용문은 경문대왕이 18세에 국선, 즉 화랑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18세에 국선이 된 것을 성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로써 추측컨대 고대에는 관례를 행하는 나이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20세 이전까지는 관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관례는 왕이나 귀족계층들의 자제들이 행했으며, 그 연령도 13세, 15세, 18세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관례 연령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관례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관례와 관련된 유사 기록으로 미루어 우리 나름대로의 관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婚禮 - 왕실 혼례 절차와 혼인 형태

혼례란 성인이 된 남녀가 부부로 결합하는 의례이다. 『삼국유사』에는 혼례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대부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개가 궁중혼례에 대한 것이다. 혼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두 성인의 나이 열세 살이 되자, 오봉(五鳳) 원년 갑자년(BC 57)에 남자는 왕이 되고, 그 여자로 왕후를 삼았다.<sup>13)</sup> (필자 밑줄)

그런바 고대에 관례를 제대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곧 9간(九干) 등을 보내어 목련(木蓮)의 키를 바로잡고 계목의 노(桂楫)를 들어 그들을 맞이하여,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 했다. 왕후는 말했다. ‘나는 본시 너희들과 전혀 모르는데 어찌 경솔히 함께 따라 가겠느냐?’ 유천간(留天干)들이 돌아와서 왕후의 말을 전달했다. 왕은 그렇게 여겨 유사(有司)를 거느리고 행차하여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 쯤 되는 곳에 가서, 산 변두리에 장막의 궁전을 설치하여 기다렸다. 왕후도 산 밖의 별포(別浦) 나루터에 배를 매고, 육지로 올라와서 높은 언덕에서 쉬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폐백 삼아 산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 왕후가 점점 행재소(行在所)로 다가가니 왕은 나와서 그녀를 맞이하여 함께 장막의 궁전에 들어갔다. …… 이에 왕은 왕후와 함께 침전(寢殿)에 있는데, 왕후는 조용히 왕에게 말했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을 5월 달에 부왕(父王)과 모후(母后)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외가 어젯밤 꿈에 함께 하늘의 상제를 뵈오니 상제께서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 보내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신성한 분이란 이 사람이며, 또 새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배필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와 작별하고 그 곳 가락국을 향해 떠나라 하시었습니다.’ …… 왕은 말했다. ‘나는 나면서부터 자못 신성하여 공주가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을 먼저 알았으므로 신하들에게서 왕비를 맞이하는 청이 있었으나 굳이 듣지 않았소. …… 드디어 혼인하여 두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다. …… 8월 1일에 왕은 대궐로 돌아오는데, 왕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sup>14)</sup> (필자 밑줄)

13) cf. 주 3).

14)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駕洛國記>. “尋遣九干等 整蘭橈 揚桂楫 而迎之 旋欲陪入內 王后乃曰 我與等素昧平生 焉敢輕忽相隨而去 留天等返達后之語 王然之 率有司動蹕 從闕下西南六十步許地 山邊設幔殿祇候 王后於山外別浦津頭 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著綾袴爲贄 遣于山靈也 …… 王后漸近行在上出迎之 同入帷宮 …… 於時王與后共在御國寢 從容語王曰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在本國時 今年五月中 父王與皇后 顧妾而語曰 爺孃一昨夢中 同見皇天上帝謂曰 駕洛國元君首露者 天所降而俾御大寶 乃神乃聖 惟其人乎 且以新莅家邦 未定配偶 卿等須遣公主而配之 言訖昇天 …… 備於此而忽辭親 向彼乎往矣 …… 王答曰 朕生而頗聖 先知公主自遠而屆 下臣有納妃之請 不敢從焉 …… 遂以合歡 兩過清宵 一經白晝 …… 八月一日廻鑾

왕은 수레를 보내어 그 여자를 궁중에 맞아들여 왕후로 삼았다.<sup>15)</sup> (필자 밑줄)

태조는 …… 장녀 낙랑공주를 그에게(경순왕) 아내로 주었다. …… 태조는 매우 기뻐하여 후한 예로써 대우하고 사람을 시켜 알리었다. …… ‘원컨대 종실과 결혼해서 같이 장인과 사위의 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왕은 대답했다. 내 백부 덕렴(德廉)에게 딸이 있는데, 심덕과 용모가 아름다우니 이 사람이 아니면 내정(內政)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태조가 그녀에게 장가드니 이가 신성왕후(神成王后) 김씨다. …… 태조의 손자 경종(景宗) 주(侁)는 정승공(政丞公: 경순왕)의 딸을 맞이하여 비를 삼으니 이가 헌승황후(憲承皇后)이다.<sup>16)</sup> (필자 밑줄)

저는 하백(河伯)의 딸입니다. 이름을 유화(柳花)라고 합니다. 여러 아우들과 나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기는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라 하면서 저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유인해 가서, 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는 내가 중매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sup>17)</sup> (필자 밑줄)

고려 이전의 우리의 혼례 예속이나 풍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삼국유사』에 전하는 기록들을 통해 그 일단의 실마리를 추찰해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삼국유사』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주로 중국의 자료 등을 통해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東沃沮의 경우 여자가 열 살이 되면 서로 혼약을 맺고 신랑 집으로

與后同輦 …(後略)”

- 15)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智哲老王>. “王遣車邀入宮中 封爲皇后”
- 16)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金傅大王>. “太祖 …… 以長女樂浪公主妻之 …… 太祖喜甚 待之厚禮 使告曰 …… 願結婚於宗室 以永甥舅之好 王答曰 我伯父德廉 有女子 德容雙美 非是無以備內政 太祖娶之 是爲神成王后金氏 …… 太祖之孫景宗 聘政承公之女爲妃 是爲憲承皇后”
- 17)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高句麗>.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私之 而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于此”

가서 성인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신부 집에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 혼례를 올렸다는 내용,<sup>18)</sup> 高句麗의 경우 혼인이 정해지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다가(별도의 작은 집에서 살음. 婿屋.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 집에 살도록 허락을 받을 때 혼수로 돈과 폐백을 준다.)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sup>19)</sup> 扶餘의 경우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내용,<sup>20)</sup> 濊의 경우 同姓끼리 혼인하지 않았다는 내용<sup>21)</sup> 등이 다. 그러나 중국의 자료들은 우리의 혼례 습속에 대하여 폄하적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에 있어서 다소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sup>22)</sup> 그러면 제시한 인용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인용문은 혁거세왕과 알영이 13세에 혼인을 했다는 내용이다. 한 쌍의 남녀가 부부로 결합하는 혼인 형태는 혁거세왕 신화에서 그 희미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정경주는 혁거세왕과 알영의 혼인은 정상적인 성인의 혼인과정과 사뭇 다르다고 하였다. 그것은 두 聖兒가 이미 아이 적부터 성스러운 한 쌍의 동남동녀로 인정되어 어릴 때부

18) 『三國志』. 「東夷傳」, <東沃沮>.

19) 『三國志』. 「東夷傳」, <高句麗>.

20) 『後漢書』. 「東夷傳」, <兄死妻嫂>.

21) 『後漢書』. 「東夷傳」, <同姓不婚多所忌諱>.

그런데 우리의 후대(조선시대) 자료를 보면, ‘濊에서는 동성끼리 혼인을 하지 않았다.(『文獻備考』, 禮考36, 「私婚禮」.) 扶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상(喪)을 당하면 혼인하지 않았다.(『靑莊館全書』, 第 8卷, 「昏禮」.)는 등의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고대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이 같은 경우 혼인을 하지 않았다.

22) 중국의 『三國志』나 『後漢書』, 그리고 『桓檀古記』나 김교헌의 『神檀民史』(고동영 역, 한뿌리, 1986.) 등은 중국의 시각에서 기술하거나 사료로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바, 사실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들을 인용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이 점에 유의하여 이들 자료들을 가급적 배제하였다.

陳壽가 편찬한 『삼국지』를 보면, ‘兄死妻嫂’에 대하여 흉노의 풍속과 같다고 하여 폄시 하고 있다.

터 한 궁실에서 봉양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위지』 「동이전」에 전하는 豫婿制와 豫婦制의 형태를 동시에 결합한 양식이라고 보았다.<sup>23)</sup> 일견 타당성 있는 견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 간단한 기록을 중국 자료의 예를 들어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내용 그대로 혁거세왕과 알영이 13세에 혼인을 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번째 인용문은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에 대한 기록으로, 그 절차가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 내용이기도 하나 당시의 혼례(특히 왕실혼례 <국혼>)의 일면을 추찰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 기록은 禮書의 六禮 절차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수로왕과 허황옥이 혼인 전에 하늘의 계시로 서로 혼인할 것을 암시한 것은 議婚으로 볼 수 있으며, 허황옥이 수로왕을 만나서 자신의 출신과 성명, 나이를 언급한 것은 問名에 해당된다. 그리고 留天干 등 신하들이 허황옥을 마중 간 것이라든지, 수로왕이 대궐 밖에 별도의 행재소(행궁)를 차린 것 등은 親迎의 절차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대궐 밖에 별도의 궁전을 설치한 것은 우리 고유의 半親迎과 유사하다. 그리고 허황옥이 높은 언덕에서 바지를 벗어 山靈에게 바친 것에 대하여, 정경주는 사신이 다른 나라 국경에 들어서면 그곳 토지에 예를 베푼다는 禮書의 규범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sup>24)</sup> 또 나경수는 바지를 벗어버린 허황옥은 여성성을 송두리째 노출시킨 알몸으로, 여성의 발가벗는 행위는 신혼을 위한 전 단계로써 치러지는 입사식의 신화적, 제의적 표현이며, 성혼을 위한 인격전환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탄생과 등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sup>25)</sup> 그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토지에

23) 정경주, 『한국 고전의례 상식』, 신지서원, 2000, pp. 56~57.

24) *Ibid.*, pp. 60~61.

25) 나경수, 「한국 신화에 보이는 역사인식」, 『제 35회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집-동아시아 역사인식의 중층성』(경기대 수원캠퍼스 본관 7층 세미나실, 2008. 10. 24~25.), p. 158.

예를 배푼다거나, 인격전환으로 탄생과 등가적인 의미로 보기에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 이보다는 혼인 절차의 하나로써 산신에게 고평하거나 辟邪 등의 주술적 행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허황옥을 따라 두 쌍의 媵臣 부부가 함께 왔다는 것은 後行과 흡사하다. 특히 수로왕과 허황옥이 두 밤과 하루 낮을 지내고 한 수레를 타고 환궁했다는 것은 于歸(三日于歸)에 해당되는데, 반친영과 함께 우리의 고유 婚俗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인 기록은 고려 이전의 국혼 예속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왕실 혼례 절차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세 번째 인용문은 음경이 대단히 컸던 지철로왕의 혼인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는 궁중에서 혼례를 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 인용문은 신라 경순왕과 고려 태조의 혼인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경순왕은 태조 王建의 딸과, 그리고 왕건은 경순왕의 조카딸과, 또 태조의 손자 景宗은 경순왕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내용에서 근친혼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친혼은 고려시대 때 많이 했다. 경종 때 문신과 무신의 혼인 제도를 시행하고, 肅宗) 元년에 功親間의 혼인을 못하게 하였다.<sup>27)</sup> 왕실에서 임금이 신하와 짝을 지을 수 없다 하여 王氏끼리만 혼인을 하게 했다. 네 번째 인용문의 기록은 우리나라 근친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다섯 번째 인용문은 하백의 딸 유화는 해모수에게 유인되어 몰래 사통하였는데, 해모수가 사라져 버리자 부모의 책망과 함께 그 벌로 귀양을 갔다는 내용이다. 신화적인 요소와 후대의 文飾이 포함되었지만, 중매가 당시의 혼인 관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삼국유사』는 고대의 혼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

26) 『儀禮』에 보면, 우귀를 할 때에는 부부가 한 수레에 탄다.

27) 『文獻備考』, 禮考36, 「私婚禮」.

료이다. 그 중에서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 절차에 대한 기록은 신화적 요소와 후대의 문식이 가미되었지만, 고려 이전의 왕실의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왕실 혼례 절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반친영이나 삼일우귀 등과 흡사한 혼인 절차는 우리의 고유 혼속으로 볼 수 있는바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유희와 해모수의 사통 내용을 통해 당시의 혼인이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려 초에 근친혼을 했다는 기록은 자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기록은 민속학적으로나 예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 3. 喪禮 - 다양한 상례 방식과 절차

상례란 사람의 죽음을 맞고, 주검을 갈무리해 땅에 묻고 근친들이 근신하는 기간의 의식 절차를 정한 예절이다. 『삼국유사』에는 상례에 대한 기록이 출산의례, 관례, 혼례, 제례보다 많다. 그리고 그 내용도 태반은 간단하다. 상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혁거세)은 하늘로 올라가고 7일 후에 그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는데, 왕후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한다. 나라 사람이 합해 장사하고자 하니, 곧 큰 뱀이 쫓아 와서 방해했다. 머리와 사지를 각각 장사지내어 오릉(五陵)을 만들고, 또한 사릉(蛇陵)이라고 했으니 담엄사(曇嚴寺) 북릉(北陵)이 그것이다.<sup>28)</sup> (필자 밑줄)

헌제(獻帝) 건안(建安) 4년 기묘(己卯. 199) 3월 23일에 수로왕이 세상을 떠났다. 나이 158세였다. …… 마침내 대궐의 동북쪽 평지에 빈궁(殯宮)을 세웠다. 높이는 한 발이요, 둘레는 삼백 보로써, 그 곳에 장사지내고 수릉왕묘(首陵王廟)라 했다.<sup>29)</sup> (필자 밑줄)

28)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理國六十一年 王升于天 七日後 遺體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體 爲五陵 亦名蛇陵 曇嚴寺北陵是也"

탈해왕이 왕위에 있는 지 23년 만에 건초(建初) 4년 기묘(己卯. 79)에 세상을 떠났다. 소천구(疏川丘) 속에 장사를 지냈더니, 그 후에 신(神)의 명령이 있기를, ‘내 뼈를 조심해 묻으라.’ 했다 한다. (파내어 보니) 그 두골의 둘레는 3자 2치나 되고, 신골(身骨)의 길이는 9자 7치나 되고, 이는 엉키어 뭉쳐서 하나가 된 듯하고, 골절(骨節)은 모두 연이어 맺어져 있었으니, 이른바 천하에 짝이 없는 역사(力士)의 골격이었다. 뼈를 부수어 소상(塑像)을 만들어 대궐 안에 안치했더니 신이 또 일렀다. ‘내 뼈를 동악(東岳)에 안치하라.’ 그러므로 그 곳에 모시게 했다. …… 지금까지 나라에서 제사 지냄이 계속되어 왔으니 동악신(東岳神)이라 한다.<sup>30)</sup> (필자 밑줄)

의자왕은 병들어 죽으니 …… 그 옛 신하들이 가서 조상함을 허용하고, 손호(孫皓), 진숙보(陳叔寶)의 무덤 옆에 장사 지내게 하고, 또 비도 세워 주었다.<sup>31)</sup> (필자 밑줄)

세 짝은 선덕왕이 병이 없었을 때에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 ‘내가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는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初利天) 속에 장사 지내시오.’ 여러 신하는 그 곳을 알지 못하여 물었다. ‘어느 곳입니까?’ ‘낭산(狼山) 남쪽이다.’ 그 달 그 날에 이르러 왕이 과연 세상을 떠났으므로, 신하들이 낭산 남쪽에 장사를 지내었다. 그 후 십여 년 후에 문무대왕이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왕의 무덤 아래에 세웠다. 불경(佛經)에 사천왕천(四天王天)의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그제야 대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sup>32)</sup> (필자 밑줄)

29)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駕洛國記>. “以獻帝立安四年己卯三月二十三日而殂落 壽一百五十八歲矣 …… 遂於闕之良方平地 造立殯宮 高一丈 周三百步而葬之 號首陵王廟也”

30)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第四 脫解王>. “在位二十三年建初四年己卯崩 葬疏川丘中 後有神詔 慎埋葬我骨 其觸體周三尺二寸 身骨長九尺七寸 齒凝如一 骨節皆連瑠 所謂天下無敵力士之骨 碎爲塑像 安闕內 神又報云 我骨置於東岳 故令安之 …… 至今國祀不絕 卽東岳神也云”

31)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太宗春秋公>. “王病死 …… 許舊臣赴臨 詔葬 孫皓陳叔寶墓側 并爲堅碑”

32)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善德王知幾三事>. “三王無恙時 謂君臣曰 朕死於某年某月日 葬我於初利天中 群臣罔知其處 奏云 何所 王曰 狼山南也 至其月日 王果崩 群臣葬於狼山之陽 後十餘年 文虎大王創四天寺於王墳之

진덕왕(眞德王)이 세상을 떠나자, 영휘(永徽) 5년 갑인(甲寅. 654)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8년만인 용삭(龍朔) 원년 신유(661)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59세였다. 애공사(哀公寺)의 동쪽에 장사 지내고 비를 세웠다.<sup>33)</sup> (필자 밑줄)

왕(진흥왕)은 세상을 떠날 때에 머리를 깎고 법의(法衣)를 입고 돌아갔다.<sup>34)</sup> (필자 밑줄)

대왕(문무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만인 영룡(永隆) 2년 신사(辛巳. 681)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에 따라 동해의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냈다. 왕은 평시에 항상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말했다. 나는 죽은 후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佛法)을 받들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오.<sup>35)</sup> (필자 밑줄)

(자장은) 드디어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시체는 화장하여 유골을 굴속에 안치했다.<sup>36)</sup> (필자 밑줄)

그(원효)가 세상을 떠나자, 설총은 그 유해를 부수어 진용(眞容)을 소상으로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 사모하여 극도의 슬픈 뜻을 표시했다. 설총이 그때 곁에서 예배 하니 소상이 문득 고개를 돌려 보았으므로 지금도 여전히 돌아본 채로 있다.<sup>37)</sup> (필자 밑줄)

율사(진표)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절 동쪽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떠나니, 제자들이 그 시체를 옮기지 않고 공양하다가 해골이 흩어져 떨어짐에 이르러서 이

下 佛經云 四天王天之上 有忉利天 乃知大王之靈聖也”

- 33)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太宗春秋公>. “眞德王薨 以永徽五年甲寅卽位 御國八年 龍朔元年辛酉崩 壽五十九歲 葬於哀公寺東有碑”
- 34)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眞興王>. “終時削髮 被法衣而逝”
- 35)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 “大王御國二十一年 以永隆二年辛巳崩 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 36) 『三國遺事』 卷 第四, 「義解」 第五, <慈藏定律>. “遂殞身而卒 荼毗安骨於石穴中”
- 37) 『三國遺事』 卷 第四, 「義解」 第五, <元曉不羈>. “旣入寂 聰碎遺骸 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聰時旁禮 像忽廻顧 至今猶顧矣”

에 흙으로 덮어 묻고 무덤으로 삼았다. …… 나는 울사의 뼈가 없어질까 두려워 하여 정사년(丁巳年, 1197) 9월에 그 일 때문에 소나무 밑에 가서 뼈를 주워 통에 담았더니 3홉 가량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큰 바위 위 두 소나무 밑에 돌을 세우고 뼈를 모셨다고 했다.<sup>38)</sup> (필자 밑줄)

혜현은 고요히 앉아 세상살이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산속에서 세상을 마쳤다. 동학들이 그 시체를 옮겨 돌방 속에 모셔 두었더니, 범이 그 유해를 다 먹어버리고 다만 해골의 혀만 남겨두었다.<sup>39)</sup> (필자 밑줄)

삼국 이전의 상례에 대한 문헌 기록은 『삼국유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처럼 우리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대의 상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중국의 문헌에는 간략하나마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옥저에서는 덧널을 사용했고, 부여에서는 殉葬을 했으며,<sup>40)</sup> 고구려에서는 죽은 사람을 집안에 두었다가 3년이 지난 후 좋은 날을 택해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sup>41)</sup> 백제의 葬俗도 부모와 남편의 喪服이 3년인 점으로 보아<sup>42)</sup> 고구려와 비슷한 듯하다. 또 신라에서는 棺을 사용하여 殮을 하고 葬事를 지냈는데, 墳陵을 설치하거나, 혹은 불교의 禮에 따라 火葬을 해서 藏骨을 하기도 하고, 바다에 뿔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智證王 때에는 喪服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sup>43)</sup> 그런데 중국의 기록을 완전히 신빙할 수 없는

38) 『三國遺事』 卷 第四, 「義解」 第五,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師遷化時 登於寺東大巖上示滅 弟子等 不動眞體而供養 至于骸骨散落 於是以上覆藏 乃爲幽宮 …… 予恐聖骨堙滅 丁巳九月 特詣松下 拾骨盛筒 有三合許 於大崙上雙樹下 立石安骨焉云云”

39) 『三國遺事』 卷 第五, 「避隱」 第八, <惠現求靜>. “現靜坐求忘 終于山中 同學舉尸置石室中 虎啖盡遺骸惟髑舌存焉”

40) 『後漢書』, 「東夷傳」, <東沃沮, 夫餘>.

41) 『三國志』, 「東夷傳」, <高句麗>.

42) 『周書』, 「異域傳」, <百濟>.

43) 『北史』, 「東夷傳」, <新羅>.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成宗 때 服制가 마련되어 五服制度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葬事의 凡節에 불공을 드리는 것을 주로 하고 常例化하기도 하였다.<sup>44)</sup> 위에서 제시한 인용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인용문은 혁거세왕의 시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알영왕후도 죽어 합장하려고 했는데, 큰 뱀의 방해로 시신을 각기 장사지내어 五陵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상례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고,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떨어져 흩어진 시신을 수습하여 각기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짐작컨대 草殯이나 風葬의 한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현대 여기서 혁거세가 ‘죽은 지 7일 만에 하늘에서 유체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대로 장사를 지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장사를 치르는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왕후인 알영이 동시에 죽었다는 것은 순장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sup>45)</sup>

두 번째 인용문은 수로왕의 장례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서 ‘殯宮을 세웠다’는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궁은 분묘의 일종인 듯하다. 그리고 봉분의 높이가 1丈이요 둘레가 300步라고 한 것은, 禮書 墓制의 제후의 예에 근사하다. 현재 남아있는 신라의 왕릉들을 살펴보면 그 봉토의 높이가 세 길에 가까운 것이 많고, 1길 반 정도의 봉분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수로왕의 봉분의 높이는 1길이다. 이는 賈公彦이 제후의 봉분은 1길 반, 경대부는 8척이라고 하였는바, 수로왕은 이를 절충한 것으로<sup>46)</sup>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세 번째 인용문은 탈해왕의 장례에 대한 기록으로, ‘䟽川 언덕 가운데 묻었다가 뼈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는 과정’과 ‘뼈를 부수어 塑像을 만들어 대궐에 안치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뼈를 수습하여 묻

44) 『高麗史』, 「志, 卷 18, 禮 6」, <五服制度>. ; cf. 박경섭, *op.cit.*, pp. 43~46.

45) cf. 정경주, *op.cit.*, p. 63.

46) *Ibid.*, p. 65.

는 것은 洗骨葬의 풍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뼈를 부수어 소상(흙으로 만든 상)을 만들었다는 기사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옥저에서도 죽은 뒤에 목상을 새겨두는 풍습이 있었는데,<sup>47)</sup>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네 번째 인용문은 의자왕의 장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의자왕의 묘가 삼국시대 뒷나라의 마지막 왕인 손호, 陳의 後主로 나라를 망친 왕 진숙보 옆이라는 것이 굴욕적이다. 여기서 비석을 세웠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인용문은 선덕왕의 장례에 대한 내용이다. 埋葬을 했는데, 10여 년 후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웠다는 기사 등을 통해 선덕왕의 선견지명을 불교와 연관시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불교 장례 방식을 취하되 매장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여섯 번째 인용문은 진덕왕의 장례에 대한 기록으로, 埋葬과 비석을 세웠다는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보건대 이 시기에 매장과 비석을 세우는 풍습이 혼했음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인용문은 진흥왕이 머리를 깎고 法衣를 입고 임종했다는 기록으로, 임종 시 불교 의례를 따랐다는 내용이다. 당시 불교식 장례가 성행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인용문은 대왕암에 문무왕의 유골을 水葬했다는 기록이다. 수장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홉 번째 인용문은 자장의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굴속에 안치했다는 내용에서, 불교 장례 절차에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골을 굴속에 안치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열 번째 인용문은 원효의 장례에 대한 기록인데, 아들인 설총이 유해를 부수어 그 진용을 소상으로 만들어 분황사에 모셨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이시기에 소상의 등장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7) *Ibid.*, p. 63.

열한 번째 인용문은 진표가 죽자,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그대로 두고 공양하다가 뼈가 흩어져 떨어지자 흙으로 덮어 무덤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風葬 뒤에 매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일연이 뼈를 주어 통에 담아 소나무 밑에 돌을 세우고 뼈를 모셨다고 했다. 이로써 짐작컨대 제자들이 흙으로 덮어 묻었다고 한 것은 봉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매장한 것으로 보인다.

열두 번째 인용문은 혜현의 시신을 동학들이 석실 안에 운반해 두었는데, 벌이 유해를 다 먹고 해골의 혀만 남겼다는 기록이다. 시신을 석실에 방치한 것이 독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는 고대의 다양한 상례 방식과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그 중에서 혁거세왕의 상례에 대한 기록은 신화적인 요소와 후대의 문식이 가미되었지만, 최초의 상례(특히 왕실 상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로왕의 장례 내용을 통해 제후에 준하는 봉분을 사용했다는 점과, 탈해왕의 장사 기록을 통해 세골장 풍속과 소상을 만들었다는 것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례방식, 예를 들어 초빈, 풍장, 세골장, 매장, 수장, 화장과 장례기간, 분묘, 왕릉의 봉분 높이와 둘레, 소상을 만들고 비석 등을 세웠다는 기록에서 고대의 상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바,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고대의 상례는 나라 또는 지역, 시대마다 일정한 문화적 관습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48)</sup> 그리고 고대의 상례가 부분적이지만 오늘날의 상례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삼국유사』에 나타난 상례에 대한 기록은 민속학적으로 매우 높이 평가된다.

#### 4. 祭禮 - 국가 제의 방식과 시기, 그리고 불교식 제사

제례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절차이다. 『삼국유사』에는 제례에

48) *Ibid.*, p. 66.

대한 기록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대부분 간단하다. 제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수로왕) 아들 거등왕(居登王)으로부터 9대손 구형왕(仇衡王)까지 이 묘(廟)에 배향(配享)했다. 매년 정월 3일, 7일과 5월 5일과 8월 5일, 15일에 풍성하고 청결한 제전(祭奠)으로 제사 지냈는데, 대대로 이어 끊어지지 않았다. …… 신라 제 30대 법민왕(法敏王. 문무왕)은 …… (수로왕의 묘를)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 이내 사자(使者)를 그 옛 궁전 터에 보내어 묘에 가까이 있는 가장 좋은 밭 30경(頃)을 바쳐 제사를 마련할 토지로 삼고 왕위전(王位田)이라 부르고 위토(位土)에 부속시켰다. 수로왕의 17대손 갱세 급간(賡世級干)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그 제전(祭田)을 주관하여 매년 명절마다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과 밥과 차와 과자 따위의 많은 제물(祭物)로써 제사를 지냈으며 매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제일(祭日)도 거등왕이 정했던 연중 다섯 날을 바꾸지 않았다. …… 구형왕 말기에 이르기까지 330년 동안에 묘의 제사는 영구히 변함이 없으나, …… 신라 말기에 충지 잡간(忠至匝干)이란 자가 있었다. 금관성(金官城)을 쳐서 빼앗아 성주장군(城主將軍)이 되자, 이에 (그의 부하) 영규 아간(英規阿干)이란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빌어 묘의 제향(祭享)을 빼앗아 제사를 참람히 행하더니 단오 날에 사당에서 제를 지내던 중, 사당의 대들보가 까닭 없이 부러져서 영규는 깔려 죽었다. 이에 장군(충지 잡간)은 혼잣말로 말했다. …… ‘나는 마땅히 그 진영(眞影)을 그려 모시고 향과 등(燈)으로 받들어 신의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 마침내 교견(蛟絹) 3척에 진영을 그려서 벽 위에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촛불을 켜서 경건히 받들었다. 겨우 3일 만에 화상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려 땅 위에 고이었으니, 그것이 거의 한말 가량이나 되었다. 장군은 너무 두려워서 그 화상을 모시고 사당으로 가서 이를 불살라 버리고는 즉시 수로왕의 직계손 규림(圭林)을 불러 말했다. …… ‘이는 정녕 묘의 위령(威靈)이 내가 화상을 그려 공양함이 불손하다고 크게 노하신 것 같다. …… 그대는 왕의 직계손이니 그전대로 제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겠다.’ 규림은 선대(先代)를 이어 제사를 받들더니 나이 88세에 죽었다. …… 건안(建安) 4년 기묘(199)에 처음으로 사당을 세운 때로부터 현재 임금(고려 문종)의 즉위 31년인 대강(大康) 2년 병진(1076)에 이르기까지 대개 878년이나 되었는데 ……<sup>49)</sup> (필

49)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駕洛國記>. “自嗣子居登王 泊九代孫仇

자 밑줄)

또 향전(鄉傳)에는 고을의 늙은이들이 매양 그(이차돈)의 죽은 날을 당하면 사(社)를 만들어 흥륜사에서 모였다고 하였으니, 금월 초 5일은 곧 사인이 목숨을 버리고 불법에 순응하던 날이다.<sup>50)</sup> (필자 밑줄)

월명은 또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서 재를 올릴 때 향가를 지어 그녀를 제사지냈더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날리어 없어졌다.<sup>51)</sup> (필자 밑줄)

공(김유신)은 백석을 죽이고, 온갖 음식을 갖추어서 삼신(三神)에게 제사 지내니, 모두 나타나서 제물을 흠향했다.<sup>52)</sup> (필자 밑줄)

교사와 종묘의 큰 제사 때에는 으레 옥대를 착용했다.<sup>53)</sup> (필자 밑줄)

衡之享是廟 須以每歲孟春三之日 七之日 仲夏五之日 仲秋初五之日 十五之日 豐潔之奠 相繼不絕 …… 泊新羅第三十王法敏 …… 合于宗祧 續乃祀事 仍遣使於黍離之址 納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 付屬本土王之十七代孫廢世級干 祗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 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 …… 仇衡朝末 三百三十載之中 享廟禮典 永無違者 …… 新羅季末 有忠至匪干者 攻取金官高城 而爲城主將軍 爰有英規阿干 假威於將軍奪廟享而淫祀 當端午而致告祠 堂梁無故折墜 因覆壓而死焉 於是將軍自謂 …… 宜我畫其眞影 香燈供之 以酬玄恩 遂以鮫絹三尺 摸出眞影 安於壁上 旦夕膏炷 瞻仰虔至 才三日 影之二目 流下血淚 而貯於地上 幾一斗矣 將軍大懼 捧持其眞 就廟而焚之 卽召王之眞孫圭林而謂曰 …… 是必廟之威靈 震怒余之圖畫 而供養不孫 …… 卿是王之眞孫 信合依舊以祭之 圭林繼世尊爵 年及八十八歲而卒 …… 自建安四年己卯始造 逮今上御國三十一載 大康二年丙辰 凡八百七十八年 …(後略)”

- 50) 『三國遺事』 卷 第三, 「興法」 第三, <原宗興法 厭讎滅身>. “又鄉傳云 鄉老每當忌旦 設社會於興輪寺 則今月初五 乃舍人捐軀順法之晨也”
- 51) 『三國遺事』 卷 第五, 「感通」 第七, <月明師兜率歌>.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驚颺吹紙錢 飛舉向西而沒”
- 52)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太宗春秋公>. “公乃刑白石 備百味祀三神 皆現身受奠”
- 53)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天賜玉帶>. “凡郊廟大祀皆服之”

삼국 이전의 제례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자료들은 대부분 국가 祭儀에 대한 기록들이다. 여기서 삼국의 국가 제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고구려는 대무신왕(大武神王) 3년에 건립한 東明王廟는 始祖廟로서<sup>54)</sup> 고구려 말기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일찍부터 扶餘神과 高登神이라는 神像을 만들어 제향을 올리는 神廟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55)</sup> 백제는 매년 四仲月마다 왕이 스스로 하늘과 五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시조인 仇台廟를 國城에 세워서 해마다 4번 이 곳에 祭享을 지냈다고 한다.<sup>56)</sup> 신라는 제 2대 南解王 3년에 赫居世廟를 처음으로 세우고 네 계절마다 제사를 지냈으며, 22대 지증왕 때부터는 神宮을 건립하였고, 33대 성덕왕 때 典祀署를 두었으며, 36대 혜공왕 때부터는 五廟의 제도를 정하여 제향을 올렸다고 한다.<sup>57)</sup> 이로써 보건대 삼국시대에는 宗廟 제향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 보면, ‘설날 아침에 朝禮를 행했다’<sup>58)</sup>는 기록이 있는바, 이 시기에 의례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여 진다. 『삼국유사』는 특히 국가 제의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 고대의 국가 제의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면 제시한 인용문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 번째 인용문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제향에 대한 내용이다. 대대로 매년 5번씩 제사를 지냈으며, 왕위전 전답이 국가의 배려로 마련되었고, 제향 시 술과 단술, 떡과 밥, 다과 등의 제수를 사용했다는 기록들

54) cf.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pp.180~183.

박승범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의 ‘祀始祖廟’ 기사는 고구려의 건국시조 朱蒙을 모신 사당에 대한 비정기적인 제의로 볼 수 있다.”(『삼국의 국가제 의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2002, p. 206.)고 하였다.

55) cf. 김무조, 『한국신화의 원형』, 정음문화사, 1988.

56) cf. 『三國史記』,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 ; 박경섭, *op.cit.*, p. 53.

57) cf. 『三國史記』,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 ; 정경주, *op.cit.*, pp. 66~70.

58)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眞德王>. “是王代 始行正旦禮”

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사방식과 사당, 진영 등에 대한 기록도 있는바, 후대의 문식이기는 하지만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이차돈 사후(死後) 마을의 노인들이 社를 만들어 흥륜사에서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인데, 사를 만들어 불교식으로 지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시기 불교식 제례가 성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인용문은 월명이 주는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릴 때 향가 <제망매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광풍이 일어나 紙錢을 날려 서쪽으로 날리어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불교식 제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네 번째 인용문은 김유신이 백석을 죽이고 제물을 갖추어 삼신에게 제사 지냈더니, 삼신이 나타나 제물을 흠향했다는 기록이다. 설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김유신 생존 시 삼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삼신에 대한 제사를 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인용문은 교사와 종묘 제향 시 왕이 옥대를 착용했다는 기사인데, 여기서 당시 국가 제의를 행하고 있음을 추찰해 볼 수 있다. 옥대 착용의 의미가 심장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는 고대의 제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특히 수로왕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예컨대 제사방식과 절차, 祭田, 祭需, 祠堂, 眞影 등에 대한 기사들은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국가 제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나타난 제례는 민속학적으로나 예학사적으로 매우 높이 평가된다.

### Ⅲ. 結 語

본고는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나타난 의례, 특히 관·혼·상·제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종합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겠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관례는 왕이나 귀족계층들의 자제들이 행했으며, 그 연령도 13세, 15세, 18세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 않다. 『삼국유사』에는 관례 관련 기록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관례와 관련된 유사 기록으로 미루어 고대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혼례는 고대의 혼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중에서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 절차에 대한 기록은 신화적 요소와 후대의 문식이 가미되었지만, 고려 이전의 왕실의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왕실 혼례 절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반친영이나 삼일우귀 등과 흡사한 혼인 절차는 우리의 고유 혼속으로 볼 수 있는바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유희와 해모수의 사통 내용을 통해 당시의 혼인이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려 초에 근친혼을 했다는 기록은 자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상례는 고대의 상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 중에서 혁거세왕의 상례에 대한 기록은 신화적인 요소와 후대의 문식이 가미되었지만, 최초의 상례(특히 왕실 상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로왕의 장례 내용을 통해 제후에 준하는 봉분을 사용했다는 점과, 탈해왕의 장사 기록을 통해 세골장 풍속과 소상을 만들었다는 것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례방식, 예를 들어 초빈, 풍장, 세골장, 매장, 수장, 화장과 장례기간, 분묘, 왕릉의 봉분 높이와 둘레, 소상을 만들고 비석 등을 세웠다는 기록에서 고대의 상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바, 자료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고대의 상례가 부분적이

지만 오늘날의 상례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제례는 고대의 제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수로왕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예컨대 제사방식과 절차, 제전(祭田), 제수, 사당, 진영 등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고대의 국가 제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삼국유사』는 신화, 설화적인 요소와 후대의 문식이 가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대의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민속학적으로나 예학사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논문접수일 : 08.11.30 / 심사개시일 : 08.12.06 / 게재확정일 : 08.12.20

### <참고 문헌>

- 『高麗史』, 『文獻備考』, 『北史』, 『三國志』, 『禮記』, 『儀禮』, 『周書』  
『朱子家禮』, 『靑莊館全書』, 『後漢書』.  
최남선 편, 『三國遺事』, 민중서관, 1971.  
김종권 역, 『三國史記』, 선진문화사, 1969.  
고동영 역, 『神檀民史』, 한뿌리, 1986.  
임승국 역, 『桓檀古記』, 정신세계사, 1986.  
조선총독부, 『高麗以前の風俗關係資料撮要』, 1941.  
김무조, 『한국신화의 원형』, 정음문화사, 1988.  
김열규, 「민속자료서의 가치 ‘삼국유사’」, 『다리』 제 4·5호, 1973.  
김택규, 「삼국유사의 사회·민족지적 가치」, 『삼국유사연구론선집(1)』, 백산자료원, 1986.  
김택규, 「삼국유사의 민속체계」,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나경수, 「한국 신화에 보이는 역사인식」, 『제 35회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 발표대회 발표집-동아시아 역사인식의 중층성』(경기대 수원캠퍼스 본관 7층 세미나실, 2008.

- 박경섭, 『한국의 예속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3.
- 박승범, 「삼국의 국가제의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2002.
- 박진태, 「민속지로 본 삼국유사」, 『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2000.
- 박진태,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3.
- 송재용, 「미암일기에 나타난 민속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 1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 송재용, 『한국 의례의 연구』, 제이앤씨, 2007.
- 정경주, 『한국 고전의례 상식』, 신지서원, 2000.
-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 Abstract

*A Study about Formality on Samkookyusa — focus on the ceremonies of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 Song, Jae-Yong*

Samkookyusa is a valuable book, which shows us ancestor's formality, being folklorically highly evaluated. So I focus on this, look into Samkookyusa's formality especially the ceremonies of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Coming of age ceremony on Samkookyusa performed by a ruler or the nobilities whose age are uncertainly assumed as thirteen, fifteen or eighteen. In the times, our own ways of ceremonies were performed by them.

Marriage ceremony on Samkookyusa, especially king Sooro and Heohwangok's marriage procedure shows a part of royal family's ceremony before Korea dynasty and have a precious meaning as the earliest outset. Through premarital relation between Yoohwa and Haemosoo shows that there was a non-arranged match for marriage. A record of a marriage between near relatives at the early Korea dynasty is worthy.

The funeral ceremony record of king Hyeockgeose on Samkookyusa could be regarded as the first one. The record pointed that using a mound as feudal lords and king Talhae's funeral ceremony showed having Seagoljang customs and making a clay figure for the ceremony. Those facts are crucial documents as helping us understand our ancient time's funeral ceremonial customs.

Ancestral ceremony on Samkookyusa, specific record about ancestral ceremony for king Sooro such as formulas, procedures, ritual fields and foods, sanctuary and portrait is a worthwhile record to understand a side of national ancestral ceremony of the times.

Samkookyusa is a valuable book ceremonially and folklorically to understand the ancient times' ceremonies of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Key words: Samkookyusa, Ceremonies, Ceremonies of coming of age, Ceremonies of marriage, Ceremonies of funeral, Ceremonies of ancestral worship, Folklore